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같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같은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통지 후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변경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주문				
근거 법령				
결정 일자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유)				

붙임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에 따른 통지 결과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에 따른 통지 결과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성명	통지 기관	주민등록번호 변경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지일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성명	통지 기관	결과 통지일